

거래원가의 판단과 회계처리

IFRS 9 ‘금융상품’

1. 질의 내용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이하 ‘해석위원회’라 한다)는 IFRS 9의 거래원가 정의와 거래원가와 관련되는 IFRS 9 요구사항의 적용에 대한 요청서를 받았다.

요청서에 기술된 사실 관계는 다음과 같다.

요청서에서는 금융상품의 취득 또는 발행과 직접 관련되지만 계약 체결 전에 부담하는 원가가 ‘중분원가’에 해당하여 IFRS 9 부록 A의 거래원가 정의를 충족하는지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 질문하였다.

요청서에 기술된 사실관계에서 기업은 은행과 대출약정을 체결하려고 하고, 제시된 대출약정의 계약조건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법률 및 자문 수수료를 부담한다. 기업은 해당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재무제표의 발행승인일 현재 이 계약은 아직 체결되지 않은 상태이다.

요청서에서는 다음 두 가지 견해를 제시한다.

- a. 한 견해에 따르면, 계약 체결 전 부담하는 원가는 IFRS 9 부록 A의 거래원가 정의를 충족할 수 없다.
- b. 다른 견해에 따르면, 해당 금융상품을 실제로 취득하거나 발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더라도 계약 체결 전 부담하는 원가는 IFRS 9 부록 A의 거래원가 정의를 충족할 수 있다.

요청서는 해당 원가가 거래원가로 판단된다고 가정하는 경우, 부담하는 시점과 계약 체결 시점 사이의 기간에 이를 어떻게 회계처리해야 하는지 질문하였다.

2. 검토 내용과 결정

해석위원회가 수집한 증거에서는 계약 체결 전 부담하는 원가의 판단과 회계처리에 IFRS 9을 적용할 때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실무 적용상 다양성이 식별되지 않았다. 제시된 의견은 다음과 같다.

- a. 금융상품의 취득 또는 발행과 직접 관련되지만 계약 체결 전 부담하는 원가가 ‘중분원가’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IFRS 9의 거래원가 정의를 충족할 수 있다.

- b. 거래원가는 일반적으로 재무상태표에 선급비용이나 기타자산으로 인식된다.

결론

해석위원회는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요청서에 기술된 사항이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이 사안을 회계기준 제정·개정 과제에 추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 Notice

Copyright © IFRS Foundation All rights reserved. Translated, reproduced and distributed by the Korea Accounting Standards Board with the permission of the IFRS Foundation.

The Korean translation of this IASB Agenda Decision has not been approved by the IFRS Foundation and the IFRS Foundation accepts no liability in respect of the quality or content of this translation.

• 알림

Copyright © IFRS Foundation 모든 저작권은 보호됩니다.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의 동의를 받아 이 저작물을 번역, 재출간, 배포합니다.

이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논의 결과 한국어 번역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에서 승인하지 않았고,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은 이 번역의 품질이나 내용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